

2026. 7.

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 발의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교수
김경숙

1. 개요

미국 연방 하원의원 베스 밴 다인(Beth Van Duyne, 공화당·텍사스), 이벳 D. 클라크(Yvette D. Clarke, 민주당·뉴욕), 발레리 푸시(Valerie Foushee, 민주당·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시각예술가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스타일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CREATOR Act」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예술가의 기법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장법」(Creative Rights Ensuring Artists' Technique and Originality Are Reserved Act)이다. 이 법안은 초당적 의원 모임인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¹⁾에서의 논의와 창작자·예술가·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1) 입법 배경

CREATOR Act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생성형 AI에 의한 ‘스타일 모방’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법제는 특정 저작물의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은 규율할 수 있으나, AI가 특정 예술가의 식별 가능한 예술적 스타일을 모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AI에 의한 사칭, 딥페이크 및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주(州) 및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안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 논의는 대체로 개인의 목소리, 얼굴, 초상 또는 공연과 같은 인격적 또는 표현적 요소의 무단 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각예술가의 고유한 예술적 스타일 자체를 명시적인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예컨대 NO FAKES Act는 AI를 이용한 창작자의 목소리, 얼굴, 초상 또는 공연의 무단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²⁾ 또한 로 카나(Ro Khanna, 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창작자 권리장전(Creator Bill of Rights)’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기본

1)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는 디지털 창작자와 창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연방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경제적 기회 및 창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의원 모임(caucus)이다.

2) <https://www.judiciary.senate.gov/press/rep/releases/judiciary-committee-advances-bipartisan-legislation-to-shine-light-on-federal-court-proceedings>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법률안이 아닌 하원 결의안에 해당할 뿐이다.³⁾ CREATOR Act는 기존 입법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에 관한 기존 입법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려는 법안이다.

2) 법안 내용

(1) 보호대상

CREATOR Act의 보호대상은 특정 시각예술가의 “식별가능한 시각적 특징(distinctive visual characteristics)”이다. “식별가능한 시각적 특징”이란, 시각예술가가 공개적으로 배포한 저작물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 예술가와 공개적으로 연계되어 인식되는 식별 가능한 시각적 요소들의 결합을 말한다.⁴⁾ 다만 아이디어, 개념, 장르, 예술 사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적 양식 또는 특정 시각예술가의 작품과 공개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예술적 기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⁵⁾

(2) 규제대상

이 법안은 특정 시각예술가의 식별 가능한 시각적 특징을 모방하도록 의도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생성된 시각저작물이 합리적 관찰자들이 볼 때 그 작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예술가 작품의 상업적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스타일의 모방(stylistic impersonation)’으로 본다.⁶⁾ 따라서 이러한 스타일의 모사물을 권한 없이 판매·라이선스·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특정 시각예술가의 스타일 모사물을 생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⁷⁾

(3) 예외조항

반면, 다음의 이용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⁸⁾

- 논평, 비평, 학문적 연구, 조사 또는 교육을 위한 이용
- 특정된 시각예술가 또는 문제되는 고유한 시각적 특성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패러디 또는 풍자
- 이용이 해당 예술가의 승인이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암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의 허구적 재구성을 포함하는 역사적·전기적·다큐멘터리 저작물
- 고유한 시각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 해당 보도 또는 논평의 주제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뉴스 보도 또는 공적 사안에 관한 논평

3) <https://khanna.house.gov/media/press-releases/release-rep-ro-khanna-introduces-resolution-protect-creators-modern-platform>

4) CREATOR Act § 10(4).

5) CREATOR Act § 2(b)(2).

6) CREATOR Act § 10(11)(A).

7) CREATOR Act § 3(a)(1)-(2).

8) CREATOR Act § 4(a)(1)-(5).

- 고유한 시각적 특성의 실질적인 결합을 재현하지 않으면서 일시적·부수적 또는 경미한 유사성만을 초래하는 이용

(4) 구제수단

권리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연방 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⁹⁾ 법원은 계속 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¹⁰⁾ 또한 승소한 원고는 실제 손해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자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¹¹⁾ 상업적 행위자가 고의로 스타일 모방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품당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이 가능하고, 특정 예술가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고의적 위반의 경우에는 작품당 5만 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이 가능하다.¹²⁾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CREATOR Act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건부 책임제한(safe harbor)을 인정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¹³⁾ 책임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침해 주장 통지를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둘째, 유효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셋째, 반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¹⁴⁾

다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콘텐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잠재적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의무까지 부과되지는 않는다.¹⁵⁾ 즉, 플랫폼은 특정 침해사실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법원명령을 받은 후 신속히 대응할 것이 요구되지만, 일반적인 AI 시스템의 제공이나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 사전감시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¹⁶⁾

3. 결론 및 시사점

CREATOR Act는 생성형 AI 시대에 기존 저작권법이 포섭하지 못했던 예술적 스타일의 무단 모방 문제

9) CREATOR Act § 6(a)(1).

10) CREATOR Act § 6(b)(1).

11) CREATOR Act § 6(b)(2).

12) CREATOR Act § 6(b)(3)(A)-(B).

13) CREATOR Act § 5(a), § 6(a)(2).

14) CREATOR Act § 5(a)(1)-(3).

15) CREATOR Act § 5(b); § 7(a)(3).

16) CREATOR Act § 3(b)(1)-(2), § 3(c)(2), § 5(a)-(b).

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법안은 보호의 초점을 개별 저작물의 복제 여부에만 두지 않고, 예술가가 장기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형성한 고유한 스타일, 창작 정체성 및 시장에서의 식별 가능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생성형 AI는 기존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학습·재현한 결과물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은 해당 예술가의 시장과 창작 기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의 초점이 단순한 ‘저작물 복제’에서 나아가, 창작자 정체성의 모방과 창작물의 상업적 대체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 https://vanduyne.house.gov/_cache/files/f/6/f6e6ce85-a9d8-4514-b26b-af882e092358/8BFB865C0CB241F919D328E676FB9D8789261836D754A696D0086D8C308CDFAC.creator-act.pdf
- <https://www.judiciary.senate.gov/press/rep/releases/judiciary-committee-advances-bipartisan-legislation-to-shine-light-on-federal-court-proceedings>
- <https://khanna.house.gov/media/press-releases/release-rep-ro-khanna-introduces-resolution-protect-creators-modern-platform>
- <https://vanduyne.house.gov/2026/6/6/rep-van-duyne-clerke-and-foushee-introduce-bipartisan-creator-act-to-protect-creators-with-visual-artistic-protections>
- <https://www.axios.com/2026/06/02/creator-style-ai-protections-congress-bill>
- <https://www.axios.com/2026/06/02/creator-style-ai-protections-congress-bill>